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22. . . (제 회)	

항만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해양수산부장관)
제출연월일	2022.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항만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에 해당 기관 소속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대표가 추천하거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을 1명 포함하는 내용으로 「공공기관운영법」이 개정(법률 제18795호, 2022.2.3. 공포, 2022.8.4. 시행)됨에 따라 항만공사 비상임이사에 근로자대표가 추천하거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을 1명을 포함하고, 항만공사가 징수하는 임대료 항목에 해양산업 클러스터를 포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가. 항만공사 비상임이사에 근로자대표가 추천하거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 1명을 포함하기 위해 항만공사 비상임위원 구성과 위원의 자격을 변경(안 제5조제1항 삭제 및 제6조제6항 신설)
- 나. 항만공사가 징수할 수 있는 임대료의 항목에 해양산업 클러스터를 포함(안 제13조)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계기관 의견조회 예정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예정

3) 행정규제 : 사전규제 검토 예정

항만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항만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을 삭제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회”를 “공사의 항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6조제6호를 제7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3년 이상 재직한 해당 기관 소속 근로자(「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중에서 근로자대표(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의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

제13조제1항제2호바목을 사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해양산업 클러스터 임대료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조(항만위원회의 구성) ① <u>공사의 항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7명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한다.</u> ② (생략) 제6조(위원의 자격)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 5. (생략) <u><신설></u> 6. (생략) 제13조(사용료 및 임대료의 종류 등)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제5조(항만위원회의 구성) ① <u><삭제></u> ② (현행과 같음) 제6조(위원의 자격) 공사의 항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 1. ~ 5. (현행과 같음) 6. 3년 이상 재직한 해당 기관 소속 근로자(「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중에서 근로자대표(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의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 7. (현행 제6호와 같음) 제13조(사용료 및 임대료의 종류 등) ① -----

공사(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여객터미널 등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업을 위탁받은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14조, 제15조 및 제15조의2에서 같다)가 징수할 수 있는 사용료 및 임대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략) 2. 임대료 가. ~ 마. (생략) <u><신설></u> 바. (생략) ②·③ (생략)	----- ----- ----- ----- ----- ----- -----. 1. (현행과 같음) 2. ----- 가. ~ 마. (현행과 같음) <u>바. 해양산업 클러스터 임대료</u> <u>산.</u> (현행 바목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	---

< 의안 소관 부서명 >

해양수산부 항만물류기획과	
연 락 처	(044) 200 - 5751